

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출 통제법

2007년 7월 21일

N 300

“주요 내용”

본 법률은 무장, 전투 기술, 핵 및 특수 비핵물질, 군용 물자, 이중 용도의 상품과 기술, 원료, 재료, 기기, 국제 안보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생산과 이용과 관련이 있는 기술, 학문-기술 정보의 기본과 수출 통제 절차를 규정한다.

수입, 운송, 가공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출 통제 시스템 관련 기관과 대외 경제활동 참여자 (신청인) 의 활동이다.

수출 통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.:

- 1) 국가 안보 보장
- 2)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제도 강화
- 3) 국제 관계 안정 및 안보 시스템 구성에 협조

4) 국제 안전과 안정화 강화, 대량살상무기와 공급수단의 확산 방지

수출 통제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.:

- 1)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량 살상무기, 공급수단 및 기타 무장 및 군사 기술의 비확산에 관한 국제 조약 준수
- 2) 수출 통제 시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
- 3)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의 공개
- 4) 국제 테러와 극단주의 지원 불허
- 5) 수출 통제 절차와 법규의 널리 인정된 국제 규범과 관례에 부합

이외 본 법률은 수출 통제 대상 제품의 유형, 수출 통제와 그 집행 절차,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위반 책임 등을 규정한다.

본 법률은 2007년 8월 8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신문에 제 122 호로 공포됐으며,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.

본 법률의 시행에 따라 1996년 6월 1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출 통제법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.

“목 차”

- 제 1 조.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
- 제 2 조.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
- 제 3 조. 본 법률의 적용 범위
- 제 4 조. 수출 통제의 주요 목적과 원칙
- 제 5 조. 수출 통제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
- 제 6 조. 전권 기관의 권한
- 제 7 조. 카자흐스탄 공화국 수출 통제 시스템 부문 국가 기관의 권한.
- 제 8 조. 수출 통제 대상 제품의 유형
- 제 9 조. 수출 통제와 그 집행 절차
- 제 10 조. 총체적 관리
- 제 11 조. 회사 내 수출 통제 시스템
- 제 12 조. 선적 전 단계와 제품의 최종 사용 단계에서의 국가 관리
- 제 13 조. 대외 거래 등록
- 제 14 조.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수출 통관 관련 국제 제재 참여
- 제 15 조.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세 지역 외에서 제품의 수출, 수입, 운송,
재가공 제한
- 제 16 조. 수출 통제 부문 정보 제공 의무

제 17 조. 수출 통제 부문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 협력 목적과 형태

제 18 조. 수출 통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 위반 책임

제 19 조. 수출 통제 시스템 부문 전권 기관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
기관의 결정과 직원의 행위 (무행위) 에 대한 소송 제기

제 20 조. 본 법률의 발효 절차